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-1호

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

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• 7급 •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일 **인 사 혁 신 처 장**

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구분	직렬(직류)	선발예정인원 (총 322명)	시 험 과 목		주요 근무예정부처(예시)
			제1차시험(선택형 필기)	제2차시험(논문형 필기)	
5급 (행정) 5급	행정직(일반행정)	전국 : 115명 지역구분 : 20명 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	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한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	전 부처
	행정직(인사조직)	2명	"	필수(5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, 인사 • 조직론	인사혁신처, 그 밖의 수요부처
	행정직(법무행정)	6명	"	필수(4) : 행정법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행정학, 민사소송법 선택(1) : 상법, 노동법, 세법, 사회법, 국제법, 경제학	공정거래위원회, 법제처, 그 밖의 수요부처
	행정직(재정)	66명	"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상법, 회계학, 경영학, 세법, 국제경제학, 통계학	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그 밖의 수요부처
	행정직(국제통상)	11명	"	필수(4) : 국제법, 국제경제학, 행정법, 영어 선택(1) : 경제학, 무역학, 재정학, 경영학, 국제정치학, 행정학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	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그 밖의 수요부처
	행정직(교육행정)	6명	"	필수(4) : 교육학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 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재정학, 정책학, 교육철학, 교육심리학, 교육사회학	교육부
	사회복지직(사회복지)	3명	"	필수(4) : 사회복지학, 사회학, 행정법, 경제학 선택(1) :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사회심리학, 사회문제론, 사회법, 사회정책, 행정학	보건복지부
	교정직(교정)	2명	"	필수(4) : 교정학, 형사소송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교육학, 사회학, 심리학	법무부
	보호직(보호)	2명	"	필수(4) : 형법, 형사소송법, 심리학, 형사정책 선택(1) : 교육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	법무부
	검찰직(검찰)	2명	"	필수(4) :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, 교정학 선택(1) : 형정학, 경제학, 노동법, 사회법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회계학, 법의학	검찰청
	출입국관리직(출입국관리)	1명	"	필수(4) : 형사소송법, 국제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행정학, 정치학, 경제학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말레이-인도네시아어	법무부
5급 (기술)	공업직(일반기계)	13명	"	필수(3) :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재료역학 선택(1) : 열역학, 유체역학, 동역학, 자동제어	산업통상자원부, 특허청, 그 밖의 수요부처
	공업직(전기)	9명	"	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전기기기 선택(1) : 전력계통공학, 전력전자공학, 자동제어, 전자회로, 디지털공학	
	공업직(화공)	8명	"	필수(3) : 화공열역학, 전달현상, 공업화학 선택(1) : 반응공학, 공정제어설계, 분리공정	
	농업직(일반농업)	2명	"	필수(3) : 재배학, 식용작물학, 농업경영학 선택(1) : 토양학, 작물보호학, 원예학, 농촌사회학, 식물가공학	농림축산식품부, 그 밖의 수요부처
	임업직(산림자원)	2명	"	필수(3) : 조림학, 임업경영학, 산림정책학 선택(1) : 산림공학, 수목학, 목재가공학, 조경학, 산림보호학, 임업경제학	산림청
	해양수산직(일반수산)	1명	"	필수(3) : 수산생물학, 수산해양학, 수산경영학 선택(1) : 수산자원학, 수산양식학, 수산가공학, 어구어법학, 수산업법	해양수산부
	환경직(일반환경)	전국 : 4명, 지역구분 : 1명 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	"	필수(3) : 환경화학, 환경계획, 상하수도공학 선택(1) : 소음진동학, 폐기물처리, 환경미생물학, 환경영향평가론, 대기오염관리, 수질오염관리	환경부, 그 밖의 수요부처
	기상직(기상)	2명	"	필수(3) : 기상역학, 일기분석 및 예보법, 물리기상학 선택(1) : 기상측기 및 관측, 미기상학, 기상통계학, 기후학, 전자공학, 수치예보	기상청
	시설직(일반토목)	전국 : 8명, 지역구분 : 3명 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	"	필수(3) : 응용역학, 측량학, 토질역학 선택(1) : 재료역학, 구조역학, 철근콘크리트공학, 수리수문학, 도시계획, 유체역학, 도로공학	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그 밖의 수요부처
	시설직(건축)	전국 : 6명, 지역구분 : 1명 *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	"	필수(3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구조역학 선택(1) : 건축시공학, 도시계획, 건축재료, 철근콘크리트공학	
	시설직(시설조경)	2명	"	필수(3) : 조경계획 및 설계, 조경사 및 이론, 조경생태학 선택(1) : 공원녹지학, 경관계획 및 관리, 단지계획학, 조경재료 및 시공, 조경식물학, 생태복원공학	
	방재안전직(방재안전)	2명	"	필수(3) :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, 도시계획 선택(1) : 수리수문학, 재료역학, 건축구조학, 전기기기학, 화공열역학, 행정학	행정안전부, 그 밖의 수요부처
	전산직(전산개발)	11명	"	필수(3) : 자료구조론, 데이터베이스론, 운영체제론 선택(1) : 컴퓨터네트워크, 프로그래밍언어론, 수치해석, 정보보호론	전 부처
	전산직(정보보호)	1명	"	필수(3) : 정보보호 관리, 네트워크 보안, 소프트웨어공학 선택(1) : 정보보호 기술, 정보시스템 보안, 자료구조론	전 부처
	방송통신직(통신기술)	8명	"	필수(3) : 전기자기학, 통신이론, 전자회로 선택(1) : 회로이론, 디지털공학, 광통신공학, 위성통신공학, 컴퓨터네트워크	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그 밖의 수요부처

구분	선발분야	선발예정인원 (총 40명)	시 험 과 목			
			제1차시험(선택형 필기)		제2차시험(논문형 필기)	
			필 수	선택과목	전공평가	통합논술
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	일 반 외 교	40명	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, 한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독어, 불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 중 1과목(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국제정치학, 국제법, 경제학	학제통합논술시험 Ⅰ , 학제통합논술시험 Ⅱ

- 제1차시험의 한법과목에서 100점 만점(25문항)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 (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한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)
-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,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, 경제학에 국제경제학, 국제법에 국제공제법,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• 안보분야,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,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. ●인사 • 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,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%입니다.
-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. ●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행정)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(국제법 제외)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,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기술)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.
-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(기술)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,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.
-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,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●선발 직렬(직류)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하여 공고합니다.

▣ 지역별 구분모집표

직렬(직류)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계	25	6	2	1	2	1	1	1	2	2	–	1	1	1	1	1	1	1
행정직(일반행정)	20	5	1	1	1	1	1	1	1	1	–	1	1	1	1	1	1	1
환경직(일반환경)	1	–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
시설직(일반토목)	3	1	–	–	1	–	–	–	–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
시설직(건축)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

2 시 험 방 법

-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,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, 제3차시험 : 면접

3 응 시 자 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외무공무원은 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, 검찰직공무원은 「검찰청법」 제50조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 • 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※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「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. 응시자격*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**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** – 피성년후견인 –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–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–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–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–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–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–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  –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  –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 •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•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•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 –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–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**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제2항(외무공무원)** –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**「검찰청법」 제50조제3항(검찰청 직원)** –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**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** –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 –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- **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** –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–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음

라.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[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 유효한 것]

-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통신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

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•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 ●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[7급 제1차시험, 9급 제1 • 2차시험(병합실시)]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바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 • 주거 • 교육 •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※단,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(중간 공백없이)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

-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[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에도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야 함] 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[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]
-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• 군 •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, 한부모가족증명서(적정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수급(지원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• 군 •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 • 군 • 구청 기초생활보장 • 한부모가족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 등)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군무원시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, 인사혁신처 홈페이지–법령 • 통계정보–법령정보–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재과(☎044-201-85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

-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2.1.1.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서울 • 인천 •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)
-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. ●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구분	접수 및 취소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5급(행정)	접수기간:1.25.09:00~1.27.21:00 (취소마감일 1.30. 18:00)	제1차시험	2.18.	2.26.	4. 6.
		제2차시험	4. 6.	6.25.~6.30.	9. 2.
		제3차시험	9. 2.	9.19.~9.21.	10. 4.
5급(기술)		제1차시험	2.18.	2.26.	4. 6.
		제2차시험	4. 6.	7. 1.~7. 6.	9. 2.
		제3차시험	9. 2.	9.19.~9.21.	10. 4.
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		제1차시험	2.18.	2.26.	4. 6.
		제2차시험	4. 6.	6.25.~6.30.	9. 2.
		제3차시험	9. 2.	9.22.	10. 4.

- 시험장소,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공고하며,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 •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시험관리 상의 필요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 •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직렬 • 직류별로 시험 일자 • 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●접수시간 : 2022.1.25.(화) 09:00~1.27.(목) 21:00 (기간 중 24시간 접수)
- ※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• 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
- ※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※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, PNG)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나.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렬, 응시지역, 선택과목, 지방인재 여부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)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 • 확인하고,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정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「한국 점자 규정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-15호)」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●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제2 • 3차시험은 서울 •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.(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)
- ●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지도: 제1차시험 응시지역(서울 불 장소)이 제한되지 않으며,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●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: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●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구분	TOEFL		TOEIC	TEPS ('18.5.12. 전 시험)	TEPS ('18.5.12. 이후 시험)	G-TELP	FLEX
	PBT	IBT					
5급(행정 • 기술)	530	71	700	625	340	65(level 2)	625
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	590	97	870	800	452	88(level 2)	800

※청각장애인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'(기존 청각장애 2 • 3급)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문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[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2022년 영어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(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-684호), 참고]

- 5급(행정 • 기술) : TOEIC 350점, TEPS('18.5.12. 전 시험) 375점, TEPS('18.5.12. 이후 시험) 204점, TOEFL(PBT) 352점, FLEX 375점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TOEIC 430점, TEPS('18.5.12. 전 시험) 476점, TEPS('18.5.12. 이후 시험) 271점, TOEFL(PBT) 392점, FLEX 480점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7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2017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(주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 • 민간회사 • 학교 등에서 승진 • 연수 • 입사 • 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•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 ●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
●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[2022.2.21.(월)~2.25.(금)]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●2017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.
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[2022.2.21.(월)~2.25.(금)]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)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구분	독어		불어		러시아어			중국어			일어			스페인어		
	스넬트(SNULT)	플렉스(FLEX)	독일어능력시험(Test DAF)	괴테어학검정시험(Goethe Zertifikat)	스넬트(SNULT)	플렉스(FLEX)	델프/달프(DELF/DALF)	스넬트(SNULT)	플렉스(FLEX)	토르플(TORFL)	스넬트(SNULT)	플렉스(FLEX)	한어수평고시(신HSK)	스넬트(SNULT)	플렉스(FLEX)	델레(DELE)
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	60점	750점	수준 3	GZ B2	60점	750점	DELF B2	60점	750점	1단계	60점	750점	5급 210점	60점	750점	B2

※청각장애인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'(기존 청각장애 2 • 3급)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문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[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2022년 영어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(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-684호), 참고]

- SNULT 30점, FLEX 450점

※산HSK의 경우 iBT인터넷본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.

나.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7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 ※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SNULT, 산HSK, JPT 등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※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 • 민간회사 • 학교 등에서 승진 • 연수 • 입사 • 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•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[2022.2.21.(월)~2.25.(금)]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9 지방인재채용목표제

가. 대상시험 :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)

나. 적용대상 :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(예정)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 • 중퇴하거나 재학 • 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※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의 시험안내)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
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%입니다.
-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(다만,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)

라. 증빙서류 제출 :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(학력기술서, 졸업증명서 등)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,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마.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가. 대상시험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(교정 • 보호직렬은 적용 제외)

나. 채용목표 : 30%

-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,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

※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균형인사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, 인사혁신처 홈페이지–법령 • 통계정보–법령정보–훈령/예규/고시)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(지방인재 : ☎044-201-8381, 양성평등 : ☎044-201-83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1 기타 유의사항

가. 제1차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,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시자는 응시료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다.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고,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.

라.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(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쳤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)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.(영어 • 한국사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)

●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하며,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.

마.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제1항 및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의 계속'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 • 한국사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●영어 • 한국사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• 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 ※ 유의사항 :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 • 한국사 •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사. 제3차시험(면접시험)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